



# 제8장 기타환경 관리

제1절 토양환경 보전

제2절 유해화학물질 관리



## 제1절 토양환경 보전

### 1. 토양보전의 필요성

#### 가. 토양환경 보전의 의미

토양은 자연환경의 핵심부분으로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 및 토양을 근간으로 하는 모든 생명체의 생존기반이라는 절대적인 기능을 갖고 있다.

대기나 수질환경의 경우 자연현상에 의하여 확산·희석되거나 자체적으로 정화 제거되는 경우도 기대할 수 있으나 토양오염은 인위적으로 복원하기 전에는 자연적인 정화나 치유가 어렵고 국소적 오염상태가 계속 유지되므로 환경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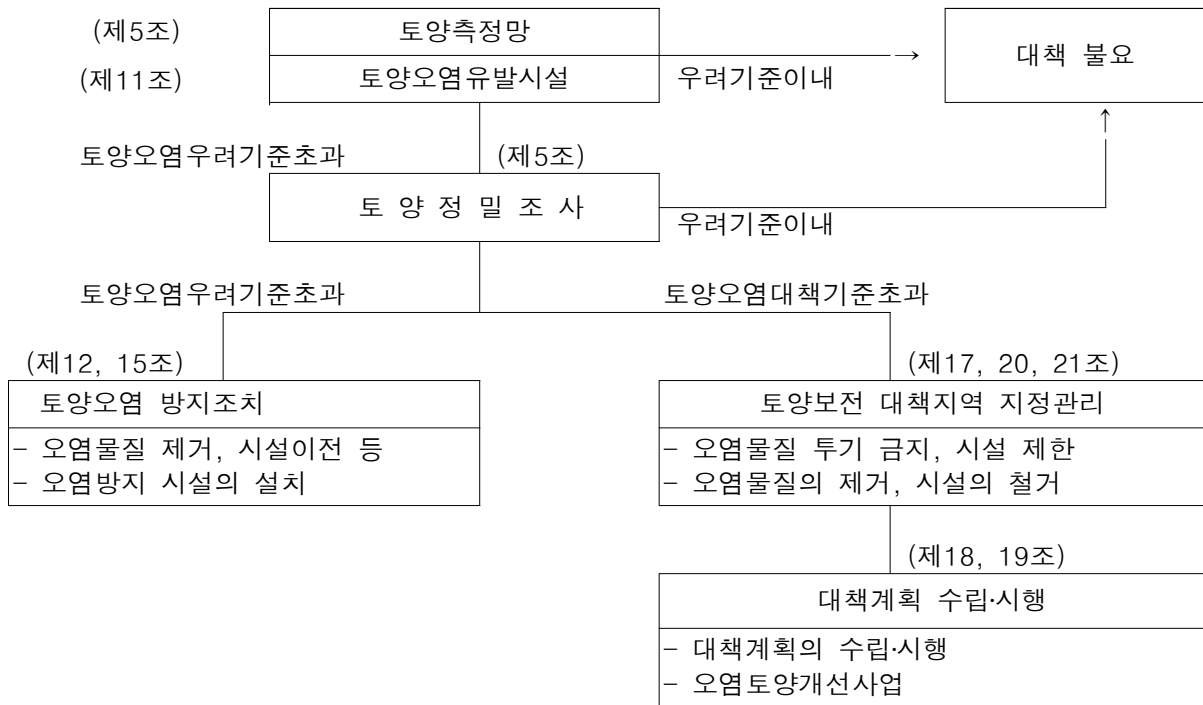
또한 토양은 각종 오염물질과 폐기물들을 최종 분해하여 생태계의 순환체계가 유지되게 하는 최후의 보루로써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토양은 지구생물체의 생존바탕으로써 혹은 산업생산의 기본요소로써 그 보전의 필요성이 매우 중요하다.

#### 나. 토양환경 관리체계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은 개별 환경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의 모든 오염물질이 대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공기나 물, 폐기물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의 관리는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등 기존의 법령에서 1차 관리토록 되어 있다.

토양환경보전법에서는 저장시설의 누출 등 직접적으로 토양을 오염시키는 경우와 간접오염의 결과로 오염된 토양의 개선에 비중을 두어 관리하고 있다.

### 1) 토양오염관리체계



### 2) 토양오염물질

토양에서 분해되지 않고 장시간 잔류하는 물질로 농작물의 생육을 저해하거나 지하수를 오염시키는 등의 작용으로 사람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토양오염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한다. 그 종류는 수은, 아연, 니켈, 불소, 카드뮴, 구리, 비소, 납, 6가크롬, 유기인, 시안화합물,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PCB), 페놀, 시안,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라클로로에틸렌,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벤조(a)피렌, 유류(동·식물성유 제외)등 21항목과 토양오염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물질을 토양오염 물질로 규정하여 관리한다.

### 3) 토양오염 기준

오염의 정도가 사람의 건강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토지의 이용중지, 시설의 설치금지 등 규제조치가 필요한 정도의 오염상태를 토양오염대책 기준으로 설정하고 있다.

대책기준의 약 40%정도로 더 이상 오염이 심화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오염수준을 토양오염 우려기준으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있다.

#### 4) 토양오염 우려기준

토양오염물질인 21개 항목에 대하여 “1지역”, “2지역”, “3지역” 으로 토양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이 기준을 초과하면 오염물질의 제거, 방지시설의 설치, 오염물질의 사용제한 등 시정명령의 대상이 된다.

<표 3-9-1> 토양오염우려기준(제1조의5 관련)

(단위 : mg/kg)

물 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카드뮴	4	10	60
구리	150	500	2,000
비소	25	50	200
수은	4	10	20
납	200	400	700
6가크롬	5	15	40
아연	300	600	2,000
니켈	100	200	500
불소	400	400	800
유기인화합물	10	10	30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1	4	12
시안	2	2	120
페놀	4	4	20
벤젠	1	1	3
톨루엔	20	20	60
에틸벤젠	50	50	340
크실렌	15	15	4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500	800	2,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8	8	4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4	4	25
벤조(a)피렌	0.7	2	7

※ 비고

1. 1지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2. 2지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3. 3지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5) 토양오염 대책기준

토양오염물질 중에서 유기인 화합물을 제외한 20개 항목에 대하여 “1지역”, “2지역”, “3지역” 으로 토양의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물·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표 3-9-2> 토양오염대책기준(제20조 관련)

(단위: mg/kg)

물 질	1 지역	2 지역	3 지역
카드뮴	12	30	180
구리	450	1,500	6,000
비소	75	150	600
수은	12	30	60
납	600	1,200	2,100
6가크롬	15	45	120
아연	900	1,800	5,000
니켈	300	600	1,500
불소	800	800	2,000
유기인화합물	-	-	-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3	12	36
시안	5	5	300
페놀	10	10	50
벤젠	3	3	9
톨루엔	60	60	180
에틸벤젠	150	150	1,020
크실렌	45	45	135
석유계총탄화수소(TPH)	2,000	2,400	6,000
트리클로로에틸렌(TCE)	24	24	120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12	12	75
벤조(a)피렌	2	6	21

※ 비고

- 1 지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광천지·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8호가목 중 주거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지만 해당한다)·학교용지·구거(溝渠)·양어장·공원·사적지·묘지인 지역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어린이 놀이시설(실외에 설치된 경우에만 적용한다) 부지
- 2 지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임야·염전·대(1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대를 말한다)·창고용지·하천·유지·수도용지·체육용지·유원지·종교용지 및 잡종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제28호가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부지만 해당한다)인 지역
- 3 지역: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목이 공장용지·주차장·주유소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잡종지(2지역에 해당하는 부지 외의 모든 잡종지를 말한다)인 지역과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국방·군사시설 부지

## 2. 토양오염 방지대책

### 가. 토양오염 실태조사

우리시에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5조 및 제6조 규정에 의거 관내 토양에 대한 오염도 변화추이 등 오염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매년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역 토양 측정망을 운영하고 있다. 토양에 대한 오염도 변화 추이 등 조사결과는 장래 예측 가능한 토양오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 1) 토양오염 실태조사

토양측정망(전국망,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은 환경부에서 총괄하며, 전국망은 환경부에서 관리하며 중금속 등 17개 항목에 대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오염우려지역 오염실태 조사는 시·군에서 총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오염도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우리시도 토양오염의 예방을 위한 사전관리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는 사후관리로 구분 시행하고 있다. 토양 오염의 개연성이 높고 위해가 심한 물질을 상시 취급하는 시설을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비지정 오염원에 대하여는 토양 측정망에 포함시켜 관리하고 있다.

또한, 매년 토양오염의 우려가 높은 관내 10여개 지점을 선정하여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결과 토양오염 우려기준 초과지역에 대하여는 오염원으로부터 거리별, 토층별 오염도와 오염면적 등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하며, 조사결과에 따라 시정명령, 토양오염 개선사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

<표 3-9-3> 토양오염실태조사 기관별 임무

기 관 명	임 무
시·군	토양오염실태조사 운영 및 유지관리 조사대상지 선정 및 시료채취 오염초과 사업장 관리 정밀조사 및 치유명령
도 보건환경연구원	측정장비 관리(기기의 정도관리 운영) 측정자료 검색 시료채취 및 분석 정밀조사

<표 3-9-4> 토양측정망 설치현황

조사번호	고유명칭	조사지점	면적(m <sup>2</sup> )
SK-⑥-148	권선고색	권선구 고색동 876-56(고색태산)	16,845
SK-⑥-147	권선구운	권선구 구운동 462	49,447
SA-⑥-219	신곡권선	권선구 세류동 527	17,399
SN-③-66	수원오목천	권선구 오목천동 805-1	2,217
SA-⑥-218	매원팔달	영통구 매탄2동 1212(원천초교)	6,298
SK-⑥-146	팔달영통	영통구 영통동 972-2	18,364
SO-①-15	수원광고	장안구 상광고동 산46(광고산)	85,686
SC-③-78	43호연무	장안구 연무동 172-7	121
SU-⑨-239	장안공원	팔달구 장안동 23-1	128,926
SL-⑥-169	원천유원지	팔달구 하동 653-1	3,790,700
SD-④-101	경부선화서	팔달구 화서동 460-1	577

2) 토양오염 실태조사 운영결과

각 지점별로 매년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험분석하고 있다. 2013년도 조사결과 토양오염 기준 이내로 조사되었고 매년 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표 3-9-5> 토양오염 실태조사 내역(2008년 ~ 2013년)

구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비고
조사지점수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0개소	12개소	

나.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 지정관리

토양오염물질을 생산, 운반, 저장, 취급, 가공 또는 처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오염물질의 배출로 토양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시설, 장치, 건축물 및 장소 중에서 지정·관리한다. 오염의 개연성, 위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송유관 시설에 대하여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시설물을 설치한 자는 저장시설의 노후정도, 시설이 위치한 입지여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1 ~ 3년의 검사주기를 갖고 환경부에서 지정 승인한 토양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3-9-6>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 시설 현황

(단위 : 개소)

계	주유소	산업시설	운수업	기타	비고
168	138	12	8	10	



### 3. 토양오염 유발시설 관리대상

#### 가. 석유류 제조 및 저장시설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1>의 제4류 위험물질 중 제1·제2·제3·제4석유류에 해당하는 인화성액체의 제조·저장 및 취급을 목적으로 설치한 저장시설로써 총 용량이 2만 리터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단, 이동탱크 저장시설은 제외한다.

<표 3-9-7> 토양오염 유발시설 대상시설물

유 별	구 분	대 상
제4류	제1석유류	아세톤, 휘발류 그밖에 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21℃ 미만인 것
	제2석유류	등유, 경유 그밖에 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21℃ 이상 70℃ 미만인 것
	제3석유류	중유, 클레오스트유 그밖에 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70℃ 이상 200℃ 미만인 것
	제4석유류	기어유, 실린더유 그밖에 1기압하에서 인화점이 200℃ 이상인 것

#### 나. 유독물 제조 및 저장시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독물 제조업, 유독물 판매업, 유독물 보관·저장업, 유독물 사용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취급제한 유독물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저장시설 중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2조에서 규정한 토양오염 물질을 저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단, 유기용제류의 경우는 트리클로로에틸렌(TCE), 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 저장시설에 한한다.

#### 다. 송유관 시설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송유관시설 중 송유용 배관 및 탱크 시설을 말한다.

#### 라. 토양오염유발시설 관리

##### 1) 토양오염유발시설 신고

토양오염유발시설을 설치 하고자 하는 자는 토양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조치(이하 “토양오염방지조치” 라 한다) 계획을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 토양오염도 검사

저장시설의 노후정도, 시설이 위치한 입지여건에 따라 사업장별로 1 ~ 3년의 검사주기를 갖고 환경부에서 지정 승인한 토양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한다.

<표 3-9-8> 검사주기 결정요인(토양오염방지 시설을 설치했을 경우)

검사주기	결정요인
1회/1년	- 최초 저장시설 설치 후 15년이 경과된 시설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위치한 사업장 -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대책지역」
1회/2년	- 최초 저장시설 설치 후 5년이 경과되고 15년 이하인 시설
1회/3년	- 당해 저장시설 설치 후 5년 이하인 시설은 최초 검사 후 3년, 5년이 되는 해에 각1회

※ 신규사업자 : 소방법에 의한 준공검사 완공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검사  
 ※ 수시검사 : 양도·임대 등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질 경우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 토양오염도 검사

## 3)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 설치현황 및 검사결과

2013년 말 현재 수원시내 특정토양오염 관리대상시설은 168개소이며, 검사 주기가 도래한 59개소의 사업장 부지에 대한 토양검사를 환경부 지정 토양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오염도검사를 실시하였다.

<표 3-9-9>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

(단위 : 개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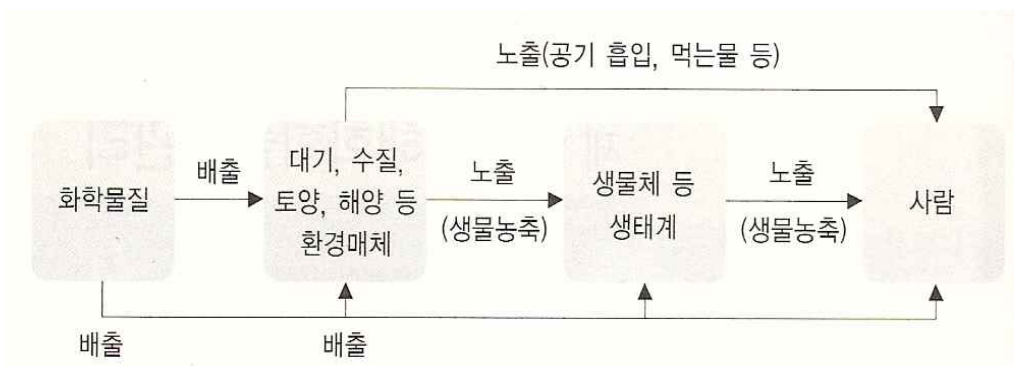
구분	검사대상	검사결과		비고
		적합	부적합	
계	59	55	4	
주유소	49	46	3	
산업시설	4	4	1	
기타시설	6	6	-	

## 1. 유해화학물질 관리현황

### 가. 현 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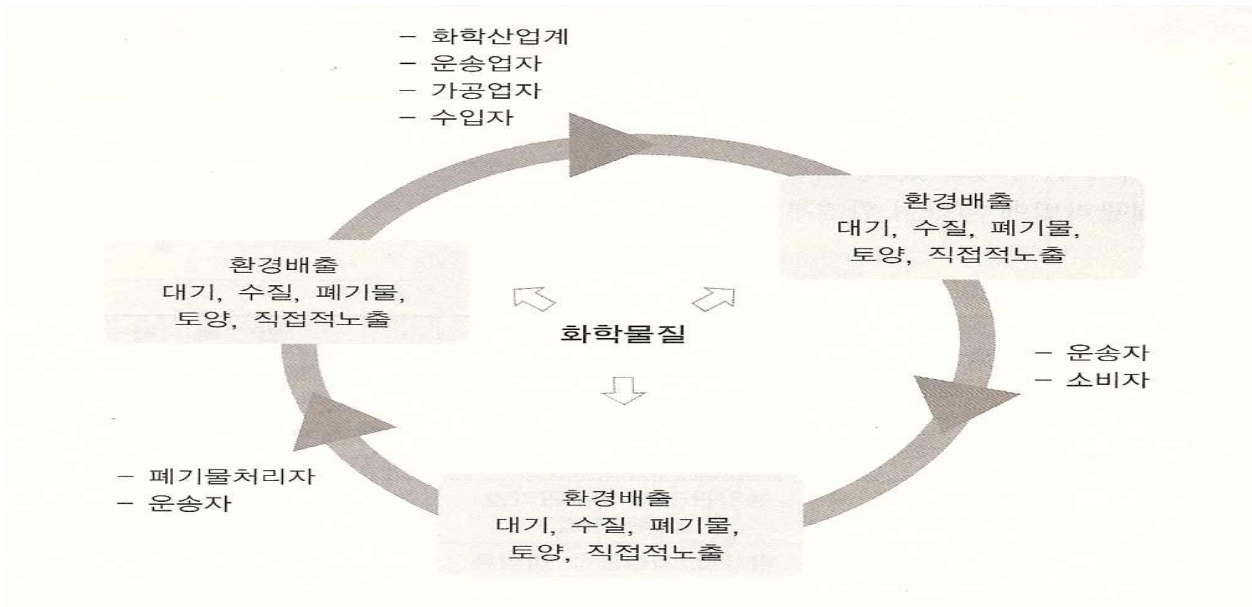
현재 국내에는 4만 3천여 종의 화학물질이 유통되는 한편 매년 400여종이 국내에 신규로 등장하고 있으며,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 국제교역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종류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및 산업활동에서 화학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대형 환경오염 사고의 발생가능성도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3-9-1> 화학물질이 사람과 환경에 노출되는 경로



또한, 유독물 등 화학물질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을 한 경제활동의 물질이기도 하지만 환경오염의 원인물질로서 생산, 유통, 사용 및 폐기 등 전 과정을 걸쳐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되므로 우리 생활 속에 언제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림 3-9-2>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 흐름도



나. 화학물질 관련 법령 : 환경부 등 8개 부처 소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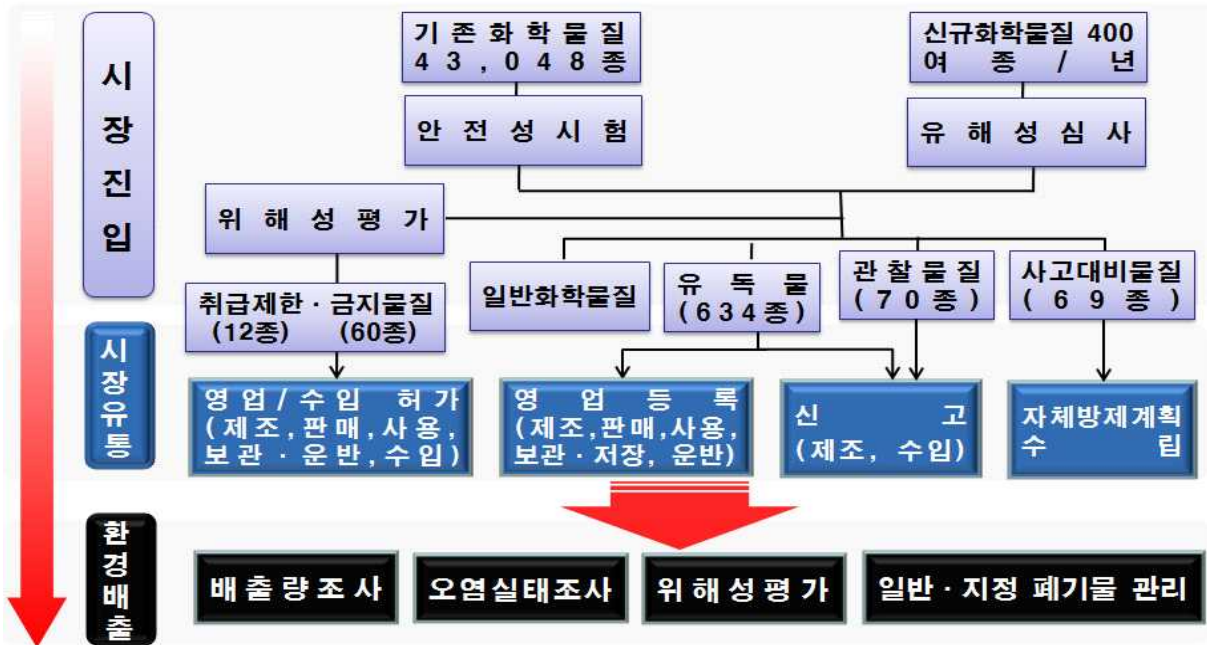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유통되고 있는 화학물질은 이용목적 및 성상에 따라 8개 부처에서 관리되고 있으며 일부 화학물질은 2개 이상의 법령에 의해 관리되고 있으며, 사람이나 생태계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유해화학물질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하여 환경부에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표 3-9-10> 화학물질 관련 법령 및 소관 부처

소 관 부 처	법 령 명	관 리 대 상
한 경 부	유 해 화 학 물 질 관 리 법	화 학 물 질
고 용 노 동 부	산 업 안 전 보 건 법	건 강 장 애 물 질
농림수산식품부	농약관리법, 비료관리법, 사료관리법	농 약, 비 료, 사 료
보건복지부	약 사 법 / 식 품 위 생 법, 마약류 등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의약품/식품첨가물 마약류 등
국 토 해 양 부	운송관련(선박, 항공 등)법	위 험 물
행 정 안 전 부	위 험 물 안 전 관 리 법/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 험 물 / 화 약 류
지 식 경 제 부	고 압 가 스 안 전 관 리 법	고 압 가 스
교 육 과 학 기 술 부	원 자 력 법	방 사 선 물 질

### 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그림 3-9-3>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도



### 라. 화학물질 관리업무 관할 기관

<표 3-9-11> 화학물질 관리업무 관할 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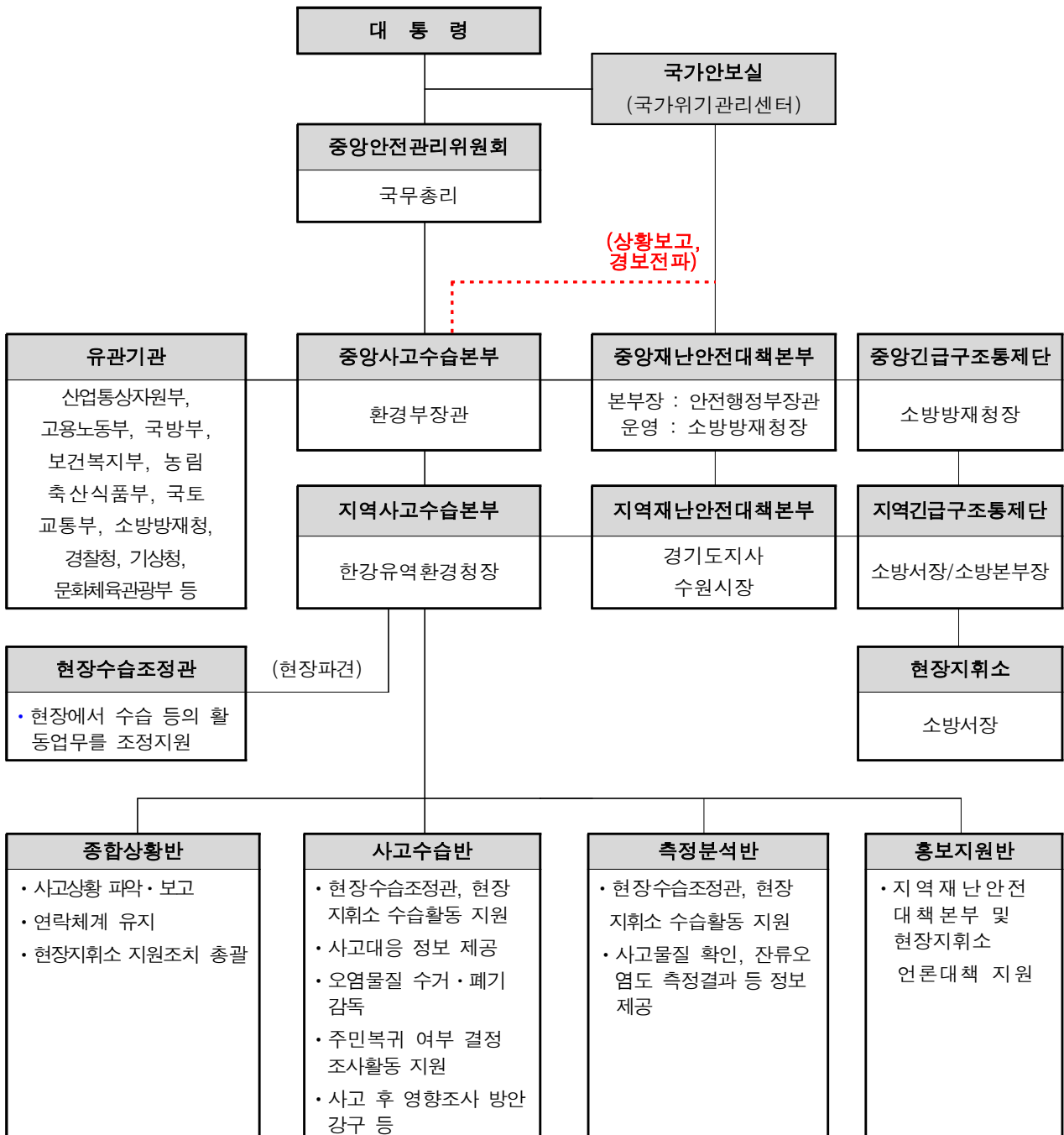
구 분	업 무 명	관 할 기 관	처 리 기 간
제조·수입 화학물질	화학물질 확인명세서 제출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등록평가과	60일
	유해성심사 면제 확인 신청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3일
유 독 물	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즉시
	영업등록	시·도지사	10일(판매 5일)
관찰물질	제조·수입신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즉시
취급제한·금지물질	수입허가	유역(지방)환경청	즉시
	영업허가		7일(판매 5일)
	수출승인		90일 이내
사고대비물질	자체방제계획수립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
취급시설	정기·수시 검사	시·도지사 또는 유역(지방)환경청	15일
	안전진단 및 개선명령		-
보고 및 검사 등	유독물 영업자 등의 실적보고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	-

## 2. 유해화학물질 사고 대응

산업의 발전과 함께 화학물질의 종류와 양이 점차 증가함으로써 유독물로 인한 사고의 위험이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으로 유독물 사고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제를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다.

### 가.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그림 3-9-4> 유해화학물질 사고발생 시 대응체계



## 나.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유관기관 책임 및 역할

- 한국가스안전공사 · 51사단 · 보건소 · 경찰서 · 소방서 · 기상대 등 유관기관의 역할
  - 소관분야 대응활동 수행
  - 현장지휘소 설치 및 초동조치, 현장대응활동 지휘, 현장통제선 설치
  - 서유지, 오염지역 방제, 응급진료소 설치 및 의료 활동 지원
  - 농 · 축산물 피해조사, 사고현장 상세기상정보 제공 등

<표 3-9-12>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기관별 책임 및 역할

담당 기관 단체	담당 업무
소방재난본부 수원소방서	· 긴급구조 구난본부 운영 · 종합적인 구조대책 및 구조현장 총괄 · 긴급구조구난장비, 물품 등 배치운영
수원 기상대	· 사고오염지역의 기상상태 및 기상변화 관측 알림
도 보건환경연구원	· 사고오염물질 오염도 측정 · 사고 피해조사 및 사고 후 영향조사
시 교육지원청	· 학교시설 안전관리 및 긴급대피시설 이용협조
경기지방경찰청 경찰서	· 통제선 안의 출입통제, 경비 및 주변교통정리 · 지원 및 사고원인 조사, 인명구조병력투입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공단	· 중대 산업사고 발생시 사고 원인조사 · 예방센터 인력지원
제51사단	· 인명구조 병력 투입, 중장비 현장지원 및 군 항공대 지원 · 잔류오염도조사, 오염지역 제독
KBS	· 재난발생관련 상황 전파 · 재난발생관련 응급복구 및 사후처리 전파
한국전력공사경기지방본부 (서수원본점)	· 사고지역 단전조치 · 사고수습 및 전력공급(조명, 동력 등)
KT 시 지사	· 긴급전화기설 및 복구 · 이동전화차량 현장상주 배치
한국수자원공사 권역별 관리단	· 이재민관련 생활용수 및 식수공급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가스안전관리 및 가스공급차단 · 가스안전관리 및 사고요인 조사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 시술인력 장비 투입 · 전기안전관리 및 사고요인 조사
시 의료원 관내 각급병원	· 구급차 등 지원, 사상자 수용처리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 이재민에 대한 구호사업 · 각종자원봉사자 관리업무
관내 보건소	· 현장응급 의료소 설치 운영 · 사상자의 응급처리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 등

<표 3-9-13> 유해화학물질 사고 시 관내 유관기관 연락처

기관명	주소	연락처	F A X	비고
육군 제2819부대 4대대	비봉 양노리 46	356-4113	356-4113	작전과
공군제10전투비행단	장지동 사서함 303-13	220-4213	221-6646	기지작전과
수원소방서	정자동 873-5	8012-9120	8012-9122	상황실
수원중부경찰서	정자동 873-4	299-5330	299-5300	상황실
수원남부경찰서	매탄동 1196	899-0129	899-1001	상황실
수원서부경찰서	탐동 911	8012-0329	8012-1001	상황실
한국전력공사 경기본부	인계동 203-10	230-8251	230-8339	배전개통팀
한국전기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영화동 338-1	240-4420	252-0590	고객지원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경기지역본부	파장동 594-2 NCC빌딩 2,3층	259-3521 (야)310-1300	256-4361	검사2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사업본부	인계동 1124	250-6054	250-6164	개발사업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남부지사	세류동 285-2	257-1690	250-6704	안전환경팀
한국농어촌공사화성·수원지사	파장동 562	240-4935	241-5315	유지관리팀
농촌진흥청	서둔동 250	299-2483	299-2531	(수문관리) 290-6620
KT수원지사	영화동 306-1	246-0800	-	리텐션팀
KT남수원지사	권선동 942	235-0060	239-0060	남수원CM팀
KT동수원지사	매탄동 111	213-0060	211-8099	특별기동팀
(주)삼천리도시가스 사업본부	팔달구 경수대로 480번길	8081-0532	8081-3987	수원안전관리팀
대한적십자사경기도지사	권선동 1015-6	230-1623	235-9845	구호복지팀
대한병원협회경기도병원회	인계동 1019-3	238-2119 (교100)		
수원지구축산업협동조합	인계동 1124-5	230-4000 230-4040	230-4006	
농협중앙회수원시지부	중동 18	250-1810	250-1883	총무팀
한국열관리시공협회 수원지부	화서2동 436-3 농민회관6층	292-0019, 7911	291-9464	
수원기상대	서둔동 208-16	294-2396	291-0366	
공군기상대		220-6411		
한국도로공사군포지사	군포시 대야미동 335	400-1331~2	437-9337	상황실
경기도수원교육지청	영화동 107-12	250-1339	246-3442	경영지원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경기지청	천천동 575-5	259-0261	0505-130-0 381	